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551

발의연월일: 2025. 4. 2.

발 의 자 : 윤준병 • 신영대 • 이원택

이성윤 · 조계원 · 허 영

박희승 · 김교흥 · 안도걸

민병덕 · 김태년 · 박민규

정동영 · 김우영 · 김태선

허종식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상기후가 심화됨에 따라 산림 화재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태운 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산림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어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운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관할 소방서장 등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피운 사람 등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 법 제76조제4항 및 제79조제3항·제4항). 법률 제 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4항 중 "3년"을 "5년"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79조제3항 중 "7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제7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벌칙) ① ~ ③ (생 략)	제76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4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			
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u>3년</u>	<u>5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3천만원</u> 이	<u>5천만원</u>		
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9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7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	3		
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에게는 7	10		
<u>0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0만원		
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4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u>30만원</u>	<u>50</u>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